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06546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0654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290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변론 종결 2017. 6. 8.

판결 선고 2017. 7.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29091 판결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E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4. 11. 21.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52,401,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52,401,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 D, F의 항소와 피고 E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5,543,563원 및 그중 1,265,211,125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D, E, F에 대하여

가. 1) 피고 C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4. 8. 12. 별지 제1 내지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주식회사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9. 25. 접수 제15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8. 5. 별지 제12, 1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9. 25. 접수 제1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8. 30. 별지 제14, 18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16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D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4. 9. 17.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E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4. 11. 21.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401,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27,401,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1) 피고 F와 피고 B 사이에 2014. 7. 29.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7. 30. 접수 제1288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F와 피고 B 사이에 2014. 8. 4.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8. 5. 접수 제13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은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 B, C, D, E, F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피고 B의 항소취지로 인정할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이라고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모두 "(주)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주문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주문 제○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제1심판결 주문 제○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제1심판결 주문 제○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제1심판결 주문 제○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고쳐 쓴다.

2. 피고 B의 항소 적법 여부

가. 제1심은, "피고 B는 (주)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75,543,563원(= 대위변제금 1,265,211,125원 + 위약금 3,540,880원 + 대지급금 6,791,558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1,265,211,1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8.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9. 9. 피고 C, D, E, F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부분(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달리 위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연대보증채무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취소와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는 항소인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75424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 B의 항소는 항소인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존재

피보전채권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는 다수 존재하고, 판례에 의하면, 법리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고유한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일반적인 통계 자료도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들 요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 피고들 주장 사정까지 참작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피고 회사"를 "(주)A"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모두 "(주)A"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의 "⑤ 피고 E은,"부터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 E은, 'P(주)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인 2013. 5.경 이미 주A과 이 사건 9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3 매매계약은 위 대물변제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3 매매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17호증(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그 작성자가 피고 E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A 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을나 제1 내지 6, 11,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A과 P(주) 사이에 이 사건 9 부동산을 특정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후 피고 E와 제3자 사이에 그 계약의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P(주)은 2014. 11.경에 이르러 그 동안 (주)A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9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무이행으로서 이 사건 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C, D, E, F의 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C의 선의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12, 13, 15, 을가 1, 2호증, 제3호증의 2, 3,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C와 피고 B는 동향인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 C은 (주)A의 주주이다.
- ② 강원도 원주에서 약 30년간 식당업을 경영하던 피고 C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임야, 전답 등을 매수한 동기에 관한 피고 C의 설명을 선뜻 수긍할 수 없다. 피고 C이 매수자금을 마련한 경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 C이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1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주)A에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의 35%를 넘는 점(일반적으로 매매계약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이다), 피고 C이 이 사건 1 매매계약 체결 후 바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한 점, 그럼에도 피고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4. 9. 25.에야 마쳐진 점,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피고 B의 상진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위 채무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내용과 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진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 D의 선의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은 (주)A의 주주로서 (주)A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 D은 (주)A의 자산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D과 (주)A 사이의 이 사건 2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 E의 선의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을나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E은 (주)A의 거래처인 P(주) 대표이사 Q의 배우자이다.

② 피고 E은 이 사건 9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3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주)A의 주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A의 (주)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위 매매계약 후에도 피고 E이 아닌 (주)A 이사 H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변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위 인수 전과 같이 위 H 명의를 통하여 변제하되 실제로는 자신이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을나 제4호증(확인서)은 피고 E 스스로 그 확인서에 기재된 '대물(아파트)로 대금 회수: 4,800만 원' 부분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후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을나 제5호증(대출원리금 상환내역서)의 일부 금액 옆에 기재된 'E'이라는 이름들은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해당 금액이 피고 E에 의하여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 F의 선의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을가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I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F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F는 피고 B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로, (주)A의 감사이다.
- ② 피고 F가 이 사건 10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전세권의 전세금은 8억 원이다. 위 금액은 이 사건 10, 11 부동산(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시가 약 4억 846만 원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피고 F가 위와 같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동기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③ 피고 F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없음에도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결론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의 "다) 피고 E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E에 대하여

-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3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설명과 같다. 나아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21. 당시 이 사건 9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변론종결시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주)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72,598,882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설명하였다. 또한 갑 제8호증의 9, 을나 제6, 9,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9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3. (주)A 이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1.경 당시 소유자인 H를 임대인으로, AN(AO생)을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 7,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6. 2.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AN이 2009. 6. 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실(AN이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전입신고열람내역에서도 확인된다), ④ AN이 2015. 4. 17. 피고 E에게 '전세 반환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9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 E이 이 사건 3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여 그 임차인이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따라서 이 사건 3 매매계약의 취소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275,543,563원의 범위 내에서 52,401,118원(= 200,000,000원 - 72,598,882원 - 75,0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2,401,118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 B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항소에는 일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피고들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양시훈

판사박옥희

별지